

조선 태종대 관복제정에 관한 연구

전 혜숙* · 류재운⁺

동아대학교 의상설유학부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 동아대학교 의상설유학부 패션디자인전공 강사⁺

A Study on the Settlement of Official Uniform under the Reign of King Taejong in the Early Joseon

Hea-Sook Chun* · Jae-Woon Ryoo⁺

Professor, Dept. of Fashion and Textile, Dong-A University*

Lecturer, Dept. of Fashion and Textile, Dong-A University⁺

(2006. 3. 2 투고)

ABSTRACT

In the early Joseon when royal authority was not still firmly established, King Taejong, or Lee Bang Won tried to make their political position guaranteed through relationships with Ming, making efforts to develop relations with the Chinese nation positively. This political orientation towards Ming by of the king Taejong was also clearly reflected in the settlement of official uniform in the early Joseon, which can be described as follows.

Gaoming(誥命), Yinxin(印信) and Mianfu(冕服) granted by Ming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foundation of Joseon suggested that the Chinese nation recognized the formal settlement of Joseon dynasty and the inauguration of King Taejong. Presumedly, the grants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firm establishment by King Taejong of his royal authority under unstable political conditions. Under the reign of King Taejong, Joseon tried to abolish ancient regime and, instead, accept systems and institutions of Ming as it maintained smooth relations with the Chinese nation. King Taejong whose royal authority was locally deemed lack in legitimacy and morality wanted to receive the moral recognition of his reign. So the monarch tried to not only strengthen his authority, but also take in advanced culture and civilization through submissive diplomatic relations with Ming. This was a practical diplomatic strategy that was clearly discriminated from toadyism. It was a policy towards Ming, pursuing substantial national benefit. Therefore, official uniform system under the reign of King Taejong should be understood accordingly.

Key words: Mianfu(冕服), settlement of official uniform(冠服制定), relations with Ming(對明關係),
submissive diplomatic relations(事大外交), granted official uniform(賜與冠服)

I. 서론

두 차례 왕자의 난을 걸쳐 제3대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와 마찬가지로 명분상 정통성에 대한 취약점을 극복하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명관계를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침 명에서 홍무제의 뒤를 이은 건문제와 연왕 사이에 ‘靖難의 变’이 일어나 내분이 일어나자 태종은 건문제와 영락제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침으로써 건문정권과 영락정권으로부터 諄命과 印章을 받게 되고, 親王爵의 구장복을 사여 받게 되었다.¹⁾

태종은 태조와는 달리 명으로부터 諄命·印信과 함께 면복을 사여 받음으로써 왕권의 정통성 시비에 대한 문제점을 일소시켜 불리한 정치적 상황을 극복하고 왕권을 확립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태종은 태조와 마찬가지로 왕권취득과정에서 비롯된 정통성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왕권강화를 위하여 대명관계를 적극 활용하였으므로 태종 당시 대명관계는 관복제정에도 많은 영향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왕자의 난으로 왕위에 오른 태종이 명분상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국내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국내외 정책을 살펴보고,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王·왕세자·문무관의 관복사여와 관복제정에 관한 기록을 발췌하여, 前朝와 明 홍무제·영락제 관복제도를 비교하여 태종대 관복제도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태종대 정치적 상황과 대명관계

태종은 즉위 전 고려 말 정몽주를 제거하고 이성계를 추대하는데 앞장서서 조선 건국에 큰 공헌을 하였지만, 태조비인 康氏와 鄭道傳·南闡 등의 배척으로 개국 후에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후 康妃가 죽고 태조가 병중에 있을 때, 이방원은 소수 재신만이 참여하는 국정운영에 불평을 품고 있었던 개국공신들을 규합하면서, 군사력을 이

용하여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으며, 정도전·남은·심효생의 정치 실세를 제거하면서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어 정종이 태조의 뒤를 이어 즉위하지만, 정종 재위 2년간은 태조에서 태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방원은 정종 즉위년 9월 兼判尙瑞司事が 되어 河嵩, 李居易, 趙英茂 등과 함께 국事를 처리하였고, 정종 2년 2차 왕자의 난을 계기로 왕세자가 되면서 軍國重事를 총관하였다.²⁾

또 정종 2년 4월 사병 혁파와 함께 도평의사사를 개혁하여 의정부로, 중추원을 삼군부로 고치면서 삼군부의 관원은 삼군부에만 근무하고 의정부에는 합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도평의사사체제에서 의정부체제로 개혁하였으니, 즉위 전 이미 왕권강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태종 이방원은 두 차례 왕자의 난을 주도하여 정도전 등의 개국공신과 芳碩·芳幹 등 정적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으나, 명분과 정통성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고 왕권강화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즉위 전 이미 왕권의 결집들이 되는 私兵과 도평의사사를 없애 왕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즉위 후에는 여러 차례의 관제개혁, 六曹直啓制, 戚族閔無咎 형제 숙청, 外戚封君의 금지³⁾ 등을 통해 국내 세력을 강화시켜나갔다.

국외적으로는 태조대의 순조롭지 못했던 대명관계가 명의 내부에서 발생한 ‘정난의 变’을 계기로 실마리가 풀리면서 對明關係가 호의적으로 전환되면서 태종의 정치적인 기반이 훨씬 강화되고 안정되어 가는데 많은 요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명은 홍무제가 사망하고 전문제가 즉위하였으나, 전문제가 홍무제 재위 당시 지방에 분봉한 번왕들의 兵權을 회수하려하자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北平의 연왕이 전문제를 상대로 ‘정난의 变’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태종은 ‘정난의 变’이 명 황실 내부 권력투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제와 연왕 사이에서 어느 편에도 협조하지 않으면서 양쪽으로부터의 보복을 회피하면서 실리적인 외교 전략을 펼쳤다. 즉 연왕에 의해 군사력이 열세이던 전

문제는 내전에 필요한 戰馬의 부족함을 조선에서 공급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태종은 건문제에게 고명과 인신을 요청하게 되었다.

건문제는 태종의 왕위계승에 대한 의혹이 있었지만 중국 내에서 일어난 '정난의 변'으로 인하여 조선정치에 간섭할 여유도 없었으며, 조선과 연왕의 결탁을 미연에 방비하기 위해 조선을 회유해야만 하는 상황⁴⁾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건문제는 요청 즉시 고명과 인신을 발급하는 한편, 이례적으로 조선왕실의 親戚과 陪臣들에게까지 하사품을 전달하는 등, 조선과의 관계회복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이전부터 조선이 계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一年三貢制 수락하고 戰馬交易을 요청⁵⁾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난의 변'이 끝나고 연왕이 황제위에 올랐다는 정보가 전해지자 태종은 즉시 '建文' 연호를 중지⁶⁾하고 축하사절을 보내 연왕을 新皇帝로서 가장 먼저 인정해 줌으로써⁷⁾ 영락제는 조선에 대해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영락제는 그전에 있었던 조선과 건문제 간의 외교관계를 不問에 붙이는 한편, 새로이 諧命과 印信을 발급⁸⁾하고, 그간 태조부터 명에 요구했던 宗系辨謠⁹⁾의 개정을 약속하고, 公嶮鎮 이남의 10處 여진인에 대한 지배권도 재확인 해주는 등¹⁰⁾ 이후 양국의 관계는 호의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는 정치뿐만 아니라 관복제정에도 영향을 미쳐 조선왕조 처음으로 건문제와 영락제 두 황제에게 태종은 명의 親王爵에 해당하는 구장복을 사여 받게 되었다.¹¹⁾

이와 같이 조선 개국 이래 명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던 조선국왕의 諧命과 印章, 冕服을 건문제와 영락제 두 황제에게 받아냈다는 사실은 왕위 계승에 명분과 정통에 흠이 있던 태종의 왕위와 왕권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태종대 명제를 실체적으로 따르려고 애쓰고 있음을 볼 때 이는 명의 우호적인 관계가 관복제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로서, 이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한다.

III. 태종대 관복제정 내용

태종대의 복식기록을 보면, 명의 건문제와 영락제로부터 왕의 면복을 두 차례 사여 받았으며, 왕세자의 조복과 제복도 사여 받았으며, 태종10년8월에는 의례 정비를 위해 儀禮詳定所를 설치하고,¹²⁾ 태종16년1월에는 冠服色을 설치¹³⁾하여 문무관의 조복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태종대 관복에 관한 기록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발췌하여 관복사여와 관복제정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태종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기록

1) 관복사여에 관한 기록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관복사여에 관한 기록으로는 왕의 면복사여가 두 차례 있었고, 왕세자의 조복과 제복사여가 있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종원년12월9일/ 건문제가 면복을 주문하면 만 들어 보내겠다는 내용을 사신이 전하다.

영의정부사 이서 총제 안원 등이 명에서 돌아왔다. … 이들이 보고하기를 “명의 禮制를 禮部에 청하였더니, ‘중국의 예제는 藩國에서 행할 수 없다.’ 하였으며, 冕服을 청하였더니, “奏聞하면 만들어 보내겠다.” 하였고, 관제를 고치기를 청하였더니, “주문하면 허락하겠다”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京師에 있으면서 황제가 친히 군사를 점검하는 것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장차 연왕을 치려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¹⁴⁾

태종2년2월2일/ 사신이 돌아와 황제가 면복을 내려주었다는 소식을 전하다.

直藝文館 李擔에게 鞍馬를 내려주었으니, 擔이 사온사로 민무질이 서장관이 되어, 打角夫 이을생과 함께 돌아와서, “황제께서 鴻臚行人 반문규를 보내어 면복을 가지고 오고, 이답에게는 鞍馬를, 이을생에게는 말을 하사하였습니다.”고 아뢰자, 임금이 “지금 중국의 사신 반문규가 면복을 가지고 온다니, 禮를 갖추어 맞이함이 옳겠다. 전일에 사온 할 때에는 말만을 바쳤었는데, 이번에는 반드

시 안장과 말을 갖추어야 되겠다.”¹⁵⁾

태종2년2월26일/ 건문제가 사여한 면복을 가지고 오다.

황제가 鴻臚寺의 行人 潘文奎를 보내 임금에게 면복을 내려주었다. 山棚을 맷고 儂禮를 갖추었다.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郊外에 나가 맞이하고 대궐에 이르러勅書를 받았다. 冕服이 나음에 면복을 입고 行禮하였다. 그 칙서는 이러하였다. “조선 국왕에게 칙서를 내리노라. 近者에陪臣이 와서 조회하고 자주 면복을 내려 주기를 청하므로, 이 일을 有司에게 내려 보내 옛 제도를 상고해 보게 하였더니 말하기를, ‘四夷의 나라가 비록 크다 하더라도 子爵이라 하였습니다. 또 조선은 본래부터 郡王의 벼슬이오니 五章이나 七章服을 내려 주셔야 옳습니다.’ 하였다. 짐이 春秋의 의리를 생각하매, 먼 곳 사람으로 중국에 스스로 조회하면 중국으로 대접한다 하였다. 이제 조선은 진실로 먼 나라이면서도 스스로 禮義에 나왔으니 子爵이나 男爵으로 대접할 수 없다. 또 땅이 멀리 해외에 있어 중국의 龍數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신하와 백성을 호령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특명으로 親王의 九章服을 내려 주며使者를 보내 짐의 뜻을 알리는 바이다. 아! 짐이 王에 대하여 특별히 사랑하고 흡족하게 함이 내 骨肉과 다름이 없게 함은 親愛함을 보이는 까닭이다. 王께서는 공경하고 삼가며, 충성하고 효도하여 이 같은 龍命을 보전하고, 대대로 東藩으로서 중국을 도와 짐의 뜻에 맞게 하라.”¹⁶⁾

태종3년10월27일/ 영락제가 사여한 면복을 가지고 왔다.

朝廷 사신 황업·박신, 翰林待詔 王연령·鴻臚寺行人 최영이 이르렀는데, 冕服과 太上王의 表裏와 中宮의 관복과 元子의 서책을 싸 가지고 왔다. 山棚과 結綵를 베풀고 儂禮를 갖추었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西郊에서 맞아 경덕궁에 이르러 준 것을 받았다. 禮가 끝나매, 儂이 內殿에 들어가서 靜妃에게 관복을 전하고 나오니, 임금이 禮를 행하고 태평관에 가서 잔치를 베풀었다. 禮部咨文은 이러하였다. “欽依하여 朝鮮國王과 王父에게 주는 段匹·書籍 등의 물건과, 中宮殿天下에게 賞賜하는 王妃冠服과 禮物을 欽差內官 太監 黃儼에게 교부하여 가지고 가게하고, 이를 本國에

移咨해서 알리어 시행한다. 王 冠服 1副, 香皂皺紗九旒平天冠 1頂 内에 玄色素綺絲 表·大紅素綺絲 裏, 平天冠板 1片, 玉桁 1根, 五色珊瑚玉旒珠와 膽珠 모두 166顆 内에 紅이 36顆, 白이 36顆, 蒼이 36顆, 黃이 36顆, 黑이 18顆, 青白膽珠 4顆, 金事件 1副 모두 80箇件 内에 金簪 1枝, 金葵花 大小 6箇, 金池 大小 2箇, 金釘과 螞蝗搭釘 58箇, 金條 13條, 大紅熟絲線條 1副, 大紅素綺線珠袋 2箇, 九章絹地紗衰服 1套 内에 深青粧花衰服 1件, 白素中單 1件 深青粧花敝領沿邊全, 薫色粧花前後裳 1件, 薫色粧花蔽膝 1件 上帶玉鈎五色線條全, 薫色粧花錦綏 1件, 薫色粧花佩帶 1副 上帶金鈎玉玎璫全, 紅白大帶 1條 青熟絲線組條全, 玉圭 1枝 大紅素綺絲夾主袋全, 大紅紵絲鳥 1雙 上帶素絲線條 青熟絲線結底, 大紅素綺絲襪 1雙…이다.”¹⁷⁾

태종8년4월2일/ 영락제가 왕세자에게 조복과 제복을 사여하였다.

황제가 奉天殿에 坐起하여 千官에게 齋戒하기를 명하였으니, 정월 신유일에 天地에 제사지내려 함이었다. 千官이 朝服을 갖추어 行禮하고, 世子는 常服으로 西班 9품 아래에 서 있었다. 불러나온 뒤에 李茂가 李玄을 시켜 禮部尙書 鄭賜와 趙狃에게 “太祖皇帝께서 우리나라에 冠服을 주신 詔書에, ‘國王의 1품은 中朝 3품에 준한다.’ 하시었고, 신미년에 高麗 世子 定城君이 入朝하였을 때에 位次가 六部尙書 다음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 世子가 조정 반열에 끼지 못하고 9품 밖에 있게 하여 野人·獮子와 섞여 있게 하였으니, 陛下께 아뢰어 주시오.”하니 尙書가 말하기를, “可합니다.” 라 하고 이어 王세자가 陞에 올라가 아뢰기를, “太祖 때에 外國으로서 中朝의 衣冠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뿐입니다. 지금 臣이 朝服이 없어 9품 밖에 序立하였으니, 聖察을 엎드려 바랍니다.”하니, 황제가 鄭賜를 불러 묻기를, “朕이 이미 2품에 자리하게 하였는데,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매, 정사가 대답하기를, “朝服이 없기 때문입니다.”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靖江王의 아들의例에 의하여 朝服과 祭服을 만들어 주어서 天地壇에陪祀하게 하라.”… 황제가 黃儼을 시켜 會同館에 이르러 世子에게 朝服과 祭服을 주었다.¹⁸⁾

이상의 기록으로 볼 때 태종대에는 태종2년 건문제와 태종3년 영락제로부터 면복을 두 차례 사여

받았고, 그 제도는 모두 구장복이었다. 면복을 사여 받는 예는 교외에서 사신을 맞아 雕禮의식을 행하고 난 후 궁궐에 들어와 칙서를 받은 즉시 冕服을 입고 또 行禮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태종 8년 당시 왕세자였던 양녕이 북경에 가서 황제와 함께 제사를 지내는 일에 중국 조정의 대신들과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는 점은 적극적이면서도 안정된 양국의 대명관계를 알 수 있는 기록으로서, 구체적인 제도 비교는 다음 장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2) 관복제정에 관한 기록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태종대 관복제정에 관한 기록은 의례정비를 위한 관복색 설치와 문무관의 조복제도가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종16년1월13일/ 관복색을 설치하다.

冠服色을 설치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代言에게 이르기를, “大司憲 李原이 이르기를, ‘朝會의 服色도 또한 祭服과 같이 한다면 진실로 盛한 제도일 것입니다.’하였다. 만약 조복의 제도를 고친다면 중국 조정에 청해야 되겠는가?”하니, 柳思訥이 아뢰기를, “중국 조정에서 이미 전하와 왕세자의 관복을 내려 주었으니, 배신에 이르기까지 청할 필요는 없습니다.”하였다. 임금이, “그렇다면 冠服色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다시 정부의 대신과 같이 의논하라.”하니, 유사눌이 舍人 李希老를 불러서 정부에 傳旨하였다. 左議政 河峯이, “신이 항상 啓達하고자 하였는데, 이제 聖心으로부터 나오시니, 衣冠의 용성한 제도가 저절로 제때에 맞을 것입니다.”하고, 이에 예조 판서 趙庸과 藝文館提學 許稠를 提調로 삼아, 文武百官의 朝服을 〈洪武禮制〉에 의하여 梁冠과 衣裳과 佩綬를 만들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禮服과 裢服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오래 전에 내가 裢中에 있을 때 중국 사신 黃儼이 내 裢服을 보고 말하기를, ‘服製가 옳지 못하다.’고 하였으므로, 내가 매우 부끄럽게 여겼다. 聖節進賀使로 하여금 朝服에 소용되는 紵綉과 裢服 한 벌을 무역하여 오게 하는 것이 옳겠다.”¹⁹⁾

태종16년3월30일/ 조관의 관복 제도를 예조에서 상정하다.

예조에서 朝官의 冠服 제도를 올렸다. 啓聞은 이를하였다. “삼가 흥무3년에 中書省이, 예부에서 바친 欽奉聖旨에 의거하여 冠服을 賜與한 資文안의 1款文을 상고하니, 隊臣의 祭服은 中朝 신하의 9등에 비교하여 2등급을 遞降하여서 王國은 7등으로 하였습니다. 第一等秩은 中朝의 第三等에 비교하고, 第二等秩은 中朝의 제4등에 비교하고, 第三等秩은 中朝의 제5등에 비교하고, 第四等秩은 中朝의 제6등에 비교하고, 第五等秩은 中朝의 제7등에 비교하고, 第六等秩은 中朝의 제8등에 비교하고, 第七等秩은 中朝의 제9등에 비교하였습니다. 〈洪武禮制〉에 제3등 이하 각 품의 冠服等第와 본국의 諸祭序例의 각 품의 制服等第를 참고하여 詳定하고 삼가 갖추어 啓聞합니다. 1품의 冠은 5梁, 革帶는 金을 쓰고, 佩는 玉을 쓰고, 綬는 黃色·綠色·赤色·紫色의 4색을 쓰는데, 실로 짜서 雲鶴花錦을 이루고, 아래에는 青絲綢를 맺고, 綬環은 두 개로 金을 쓰고, 窔은 象牙를 쓰고, 赤羅衣와 白紗中單은 青飾領緣, 赤羅裳青緣, 赤羅蔽膝과 大帶는 銅·白 2색의 納를 쓰고 白襪에 黑履, 角簪을 착용하였다. 2품의 冠은 4梁, 革帶는 金을 쓰고, 佩는 玉을 쓰고, 綬는 黃色·綠色·赤色·紫色 4색을 쓰고 실로 짜서 雲鶴花錦을 이루고, 아래에는 青絲綢를 맺고, 綬環은 두 개로 金을 쓰고, 窔은 象牙를 쓰고, 衣, 中單, 裳, 蔽膝, 大帶, 襪, 履, 簪를 착용하며, 여기에서부터 9품에 이르기까지 아울러 1품과 같다. 3품의 冠은 3梁, 革帶는 銀을 쓰고, 佩는 藥玉을 쓰고, 綬는 黃色·綠色·赤色·紫色 4색을 쓰고 실로 짜서 盤鶴花錦을 이루고, 아래에는 青絲綢를 맺고, 綬環은 두 개로 銀을 쓰고, 窔은 上아를 쓴다. 4품의 冠은 2梁이요, 革帶는 은을 쓰고, 佩는 藥玉을 쓰고, 綬는 黃·綠·赤 3색을 쓰고, 실로 짜서 練鶴花錦을 이루고, 아래에는 青絲綢를 맺고, 綬環은 두 개로 은을 쓰고, 窔은 上아를 쓴다. 5·6품의 冠은 2梁으로, 銀대는 銅을 쓰고, 佩는 藥玉을 쓰고, 綬는 黃·綠·赤 3색을 쓰고, 실로 짜서 練鶴花錦을 이루고, 아래에는 青絲綢를 맺고, 綬環은 두 개로 銅을 쓰고, 窔은 槐木을 쓴다. 7·8·9품의 冠은 1梁, 銀대는 銅을 쓰고, 佩는 藥玉을 쓰고, 綬는 黃·綠 2색을 쓰고, 실로 짜서 翡翠花錦을 이루고, 아래에는 청사망을 맺고, 綬環은 두 개로 銅을 쓰고, 窔은 槐木을 쓰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²⁰⁾

이상의 기록으로 볼 때 문무관의 공복²¹⁾과 제복 제도²²⁾는 태조대에 마련되었으나, 조복은 태종16년이 되어서야 명의 〈홍무예제〉를 이등체강 하여 제

도를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태종대에 사여 제정된 왕복, 왕세자복, 문무관의 조복제도를 각기 신분별로 분류하여 명의 관복제도와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왕의 면복제도

조선 건국 후 명에서 사여한 면복에 관해 <증보 문헌비고>²³⁾와 <연려실기술>²⁴⁾에서는 태조3년에 홍무제가 冕服九章·圭·玉佩를 하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태조대의 면복 사여에 관한 기록은 없으며, 태종2년 전문제가 태종에게 면복을 사여한 기록이 가장 빠르니, 문헌상 일치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조선왕에 대한 최초의 면복사여를 명 영락제로부터 사여 받은 태종3년으로 보는 견해²⁵⁾도 있다. 이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에서 전문제대에 사여된 면복이 구장복이라는 명시만 있을 뿐 제도와 物目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전문제와 영락제 사이에 내려진 면복 사여기간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태종3년의 면복사여를 조선 최초의 면복사여로 보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태종2년 전문제의 면복 사여를 최초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태종2월 중국사신이 면복과 칙서를 가지고 왔는데 성례로 맞이하지 않은데 대해 태종이 책망하고 있으며,²⁶⁾ 태종2년3월에 태종이 전문제가 면복을 보내준데 대하여 參判承樞府事 盧嵩을 남경으로 보내 사은하였다²⁷⁾는 기록이 있다. 또 태종18년11월 예문관 대제학 변계량이 찬한 태종의 신도비문에서 신사년6월에 전문제가 通政寺丞 章勤 등을 보내어 고명과 인장을 받들고 와서 태종을 왕으로 封하고, 겨울에 鴻臚寺行人 潘文奎를 보내 면복을 하사하였는데 職秩은 親王과 같다²⁸⁾고 하였다. 세종7년12월에는 세종이 황제가 내린 면복에 딸린 鳥의 색깔을 계문할 때 면복에 딸린 黑鳥은 建文年間에 내린 鳥이 아닌가 한다²⁹⁾라는 기록으로 보아서, 실제로 조선 최초의 면복사여는 태종2년 전문제대였을 것으로 본다.

또한 실록에는 태종2년 전문제가 사여한 면복이

<표 1> 태종대 왕 면복 비교

分類	高麗(1370)	明(1393)	朝鮮(1403)	明(1405)
	恭愍王19年 王冕服	洪武26年 親王冕服	太宗3年 王冕服	永樂3年 親王冕服
冠	青珠九旒	冕五采五珠九旒 紅組纓 青纓充耳 金簪導	香皂皺紗九旒 平天冠 金簪	冕冠 冠以皂紗爲之 桐板爲質 衣之以綺 玄表朱裏 前圓後方 前後各九旒 每旒五采纓九就 貫五采玉九 赤白青黃黑相次 玉衡金簪 玄絃垂青纓充耳用青玉 承以白玉瑱 朱紱纓
服	青衣五章 繡裳四章 白紗中單 黻領青緣袖襠 蔽膝繡色 二章	袞冕九章 青衣五章 繡裳四章 白紗中單 熾領青緣 蔽膝隨裳色 二章	九章絹地紗褒服 深青粧花褒服 白素中單 深青粧花黻領沿邊全 薰色粧花前後裳 薰色粧花蔽膝	袞服九章 青衣五章 繡裳四章 素紗中單 靑領標襠褶 領襯黻文十一 蔽膝隨裳色 四章
佩帶	革帶 金鈎牒 玉佩 赤白縹綠四綵小綬 二閒施金環 大帶 表裏白羅紅綠	革帶 金鈎牒佩玉 大帶表裏白羅 朱綠緣 綬五采(赤白玄縹綠)織成 純赤質 三百二十首 小綬三色同大綬 間織三玉環	薰色粧花佩帶 紅白大帶 薰色粧花錦綬	玉佩二 玲飾雲龍文 大帶素表朱裏 在腰及垂皆有綬 上綬以朱 下綬以綠 紐約用青組 小綬·大綬四采繢質 間施二玉環 龍文皆織成
圭	九寸	九寸二分五釐	玉圭	玉圭長九寸二分五釐
韁鳥	白襪·赤履	白韁·朱履	大紅紵絲鳥 大紅素綾緜襪	韁鳥皆赤色 鳥用黑絢純 黑飾鳥首

親王爵에 해당하는 9章服이라는 기록만 있음에 비해 〈증보문헌비고〉³⁰⁾와 〈연려실기술〉³¹⁾에는 九章冕服, 玉圭, 玄冕, 繪衣繪五章龍山火蟲宗彝, 繡繪裳, 大帶, 白繪中單衣, 雙佩, 紅綬, 白羅方心曲領, 繡繪蔽膝, 緋襪, 緋舄 등 物目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니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온 기록을 참조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태종3년이 아닌 태종2년 전문제가 면복 사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본다.

한편 태종3년 태종은 영락제의 고명과 인신을 받으면서 면복을 주청하여 태종3년10월에 두 번째 면복을 사여 받게 된다. 이때 사여 받은 면복은 홍무제의 前例와 體制에 의하여 제조한 것으로³²⁾ 태종3년 사여 받은 왕의 면복을 공민왕대의 사여면복³³⁾과 홍무26년·영락3년 친왕의 면복제도³⁴⁾와 함께 비교해 보고자하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冠은 모두 9旒冕으로 영락3년의 면복제도가 가장 상세히 제정되어 있다. 服은 모두 9章服으로 태종3년에 사여 받은 면복은 章紋에 관한 기록이 없으나, 공민왕19년·홍무26년·영락3년의 제도가 모두 靑衣5章, 繡裳4章이므로 태종3년에 사여 받은 면복도 이와 같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佩帶와 襪舄에 있어서 공민왕대 왕의 면복과 홍무26년의 친왕의 면복이 유사하고, 태종3년 왕의 사여 면복과 영락3년 친왕의 면복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공민왕19년의 사여 면복과 홍무26년의 친왕 면복에서는 혁대가 있으며, 大帶가 表裏白羅로서 안팎이 서로 같다. 그러나 태종3년 사여 면복과 영락3년 친왕의 면복에는 혁대가 없으며, 大帶가 밖은 흰

〈표 2〉 태종대 왕세자 조복·제복 비교

分類	身分	冠	服	佩帶	佩綬	笏	鞋襪
朝服	朝鮮 王世子	五梁冠	赤羅衣 白紗中單 赤羅裳 蔽膝	革帶	佩綬	象笏	白襪 黑履
	明 3品	五梁冠	赤羅衣 白紗中單 青飾領緣 赤羅裳 青緣 赤羅蔽膝	大帶赤白二色綢 金革帶	玉佩 黃綠赤紫織成 雲鶴花錦 下結青絲網 金綬環二	象牙笏	白襪 黑履
祭服	朝鮮 王世子	五梁冠	青羅衣 白紗中單 赤羅裳 蔽膝 方心曲領	紅白大帶 革帶	佩綬	象笏	白襪 黑履
	明 3品	五梁冠	青羅衣 白紗中單 卓領緣 赤羅裳 卓緣 赤羅蔽膝 方心曲領	大帶赤白二色綢 金革帶	黃綠赤紫織成 雲鶴花錦 下結青絲網 金綬環二	象牙笏	白襪 黑履

색, 안은 붉은 색으로 안팎의 색이 다르다.

襪舄은 공민왕19년과 홍무26년의 면복제도에서는 襪은 흰색이고, 履는 붉은 색이였으며, 태종3년과 영락3년의 면복제도에서는 襪舄이 모두 붉은색이다.

圭는 태종3년의 면복제도에서는 玉圭라고만 되어 있고 치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상과 같이 태종대에는 건문제·영락제 두 황제로부터 친왕에 해당하는 면복을 사여 받았는데, 건문제에게 사여 받은 면복은 〈조선왕조실록〉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세한 제도는 알 수 없으나, 영락제로부터 사여 받은 면복은 영락3년 친왕 면복제도와 가장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왕세자의 조복·제복제도

태종8년에 영락제로부터 세자의 조복과 제복을 사여 받았는데, 당시 사여된 조복과 제복을 세종실록에서 보면, 朝服은 5梁冠, 赤羅衣, 白紗中單, 赤羅裳, 蔽膝, 革帶, 佩綬, 黑履, 象笏이며, 祭服은 5梁冠, 青羅衣, 白紗中單, 赤羅裳, 蔽膝, 方心曲領, 紅白大帶, 革帶, 佩綬, 白襪, 黑履³⁵⁾이다.

여기서 왕세자의 제복은 조복의 赤羅衣가 青羅衣로 바뀌고 方心曲領이 추가된 것으로서, 왕세자의 제복이 문무관의 제복인 양관복을 사여 받았는데, 이를 명의 문무관 관복과 비교해 보면 〈표 2〉와 같다.

왕세자의 조복과 제복은 명의 3품에 해당하는 5梁冠을 사여 받았는데, 이는 조선 문무관 1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왕세자와 문무관 1품의 관복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 문무관의 조복제도

태종은 조복의 제도를 고치기 위하여 의례상정소와 별도로 관복색을 설치하고, 문무관의 조복을 〈洪武禮制〉에 의하여 梁冠과 衣裳과 佩綬를 만들게 하였으나, 태종16년 문무관 조복제도를 홍무14·26년 제도와 비교해 보고자하며, 내용은 〈표 3〉과 같다.

冠은 梁冠으로서 태종16년의 문무관 조복은 명에 의해 이등체강원칙에 따라 1품에서 9품까지 상세히 제정되었으며, 服은 赤羅衣 白紗中單 青飾領緣 赤羅裳青緣 赤羅蔽膝로서 품계의 구별이 없다.

문무관의 조복제도에서는 冠의 梁數 뿐만 아니라

〈표 3〉 태종대 문무관 조복 비교

分類	創定年度	一品	二品	三品	四品	五品	六品	七品	八品	九品
冠	朝鮮 太宗16年	五梁	四梁	三梁		二梁			一梁	
	明 洪武14年 洪武26年	七梁冠	六梁冠	五梁冠	四梁冠	三梁冠	二梁冠		一梁冠	
服	朝鮮 太宗16年				赤羅衣 白紗中單 青飾領緣 赤羅裳青緣 赤羅蔽膝					
	明 洪武14年 洪武26年				赤羅衣 白紗中單 青飾領緣 赤羅裳青緣 赤羅蔽膝					
帶	朝鮮 太宗16年					大帶赤白二色絹				
	明 洪武14年 洪武26年			金革帶	銀革帶		銅革帶			
				玉革帶	犀帶	金革帶	銀鍍金 革帶 (14年)		銅革帶 (14年)	
							銀鍍花 革帶 (26年)	銀革帶		烏角革帶 (26年)
佩	朝鮮 太宗16年		玉佩				藥玉佩			
	明 洪武14年 洪武26年		玉佩				藥玉佩			
綬	朝鮮 太宗16年		黃綠赤紫織成	黃綠赤紫織成盤鵠花錦		黃綠赤織成練鵠三色花錦		黃綠織成鶴鷺二色花錦		
	明 洪武14年 洪武26年		金綬環二	銀綬環二			銅綬環二			
			黃綠赤紫織成雲鳳四色花錦	黃綠赤紫織成雲鶴花錦	黃綠赤紫織成盤鵠花錦	黃綠赤織成練鵠三色花錦		黃綠織成鶴鷺二色花錦		
		玉綬環二	犀綬環二	金綬環二	銀鍍金綬 環二	銀綬環二		銅綬環二		
笏	朝鮮 太祖16年		象牙笏				槐木笏			
	明 洪武14年 洪武26年		象牙笏				槐木笏			
鞋襪	朝鮮 太宗16年					白襪 黑履				
	明 洪武14年 洪武26年					白襪 黑履				

革帶, 佩, 笏 등에 있어 차등을 두어, 명에 비해 이등체강원칙에 따라 제정되었다.

笏은 품계에 따라 1품에서 4품까지는 象牙笏, 5품에서 9품까지는 槐木笏로서 태조16년의 제도와 홍무14·26년의 제도가 같으나 이등체강원칙은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襪과 鞋는 白襪·黑履로서 모두 같다.

그리고 이때 제정된 조복은 태종16년11월 冬至에 비로소 梁冠, 中單, 裳, 蔽膝, 繡佩, 襪, 履을 착용하고 向闕賀禮를 행하였다는 기록(36)에서 태종16년 관복색을 통해서 이루어진 조복제도가 실제로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태종대에는 두 차례 왕의 면복과 왕세자의 조복·재복이 사여되었으며, 문무관 조복이 제정됨으로써 어느 정도 관복제도의 기틀이 마련되게 되었다. 이 때 내려진 관복제정은 前朝의 답습이 아닌 明의 관복제도를 따르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IV. 태종대 관복제정 의의

두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 왕위에 오른 태종은 명분상 왕권 정통성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명관계를 전개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명에서 '정난의 변'이 발생함으로써 대명관계가 호의적으로 전환되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여 관복과 관복제정에서 몇 가지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태종은 두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 왕위에 오름으로써 명분과 정통에 흠이 있었으므로 태종은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면복을 사여 받는다. 이는 명으로부터 조선의 왕위 계승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니, 조선 건국 후 처음으로 사여 받은 면복은 당시 조선의 불안정한 정치상황 속에서 태종이 면복을 군왕의 표신으로 삼아 왕권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태종대 명의 두 황제인 건문제와 영락제로부터 고명과 인신 및 두 차례의 면복사여는 태종 개인으로는 왕위계승에 있어서 정통성에 약점이 있던 태종에게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적으로는 조선이 태조 이후 내용상으로는 국가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강대국인 명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조선의 형식적 완립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둘째, 태조와 홍무제의 대립으로 악화되었던 대명관계가 조선의 태조가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고 정종 즉위 이후 태종의 즉위로 이어지고 있는 동안 명에서도 홍무제 사망, 건문제 즉위, '정난의 변'으로 영락제가 즉위하게 됨으로서 양국의 대립 세력이 동시에 사라지면서 새로운 대명관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당시 명에서 일어난 황권을 들러 쓴 황실내분은 건문제와 영락제 모두 조선을 회유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양국의 관계가 호의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니, 양국의 우호적인 대명관계는 태종대의 관복제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니, 태종대 관복제정의 실제적인 완성에는 양국의 친소관계가 많은 작용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태종은 '정난의 변'이 중국 황실 내란임을 감안하여 건문제와 연왕 어느 편에 서는 것을 삼가하고 고도의 외교정책을 펼치는데, 건문제가 '정난의 변'으로 폐하고 영락제가 즉위하자, 태종은 즉시 건문연호를 중지하고, 賀登極使를 파견함으로써 영락제의 환심을 사게 되었다.

이후 영락제는 조공국 중에 新皇帝로서의 자신을 가장 먼저 인정해준 조선에 대해 호의를 베풀며, 다양한 부분에서 친조선 태도를 나타내었다. 영락제는 태종이 요청한 새로운 고명과 인장을 허락하고, 약재 교역을 위해 조선 사신이 가지고 온 布匹을 그냥 팔아 가도록 하면서 명의 약재를 무상으로 하사하고, 표전문제로 명에 억류되어 있던 조선 사신들의 석방도 약속하고, 태종이 청구한 면복은 물론 서책까지 지급하였다.

명의 정세를 간파한 태종의 현실적 외교 전략은 태종으로 하여금 재위초기 명으로부터 두 차례 면복사여를 받아내었으니, 국내적으로는 왕권을 확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국제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藩屏國家로서 형식상 사대의 예를 행하기는 하였지만, 나아가 중국 주변의 대소국들을 향한 외교활동의 발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주변국들에게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고 본다.

따라서 태종이 명에게 고명, 인신과 함께 면복을 사여받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나, 왕권이 안정된 이후에도 조선의 관복을 제정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명제를 따른 것은 자주성을 상실한 사대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국제질서 속에서 실리적으로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현실적·실질적 외교 전략으로 이해되

어야 한다.

V. 결론

조선 초기 태종이 고도의 전략적인 사대외교를 펼치며 대명관계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명관계가 內政에도 영향을 미쳐 왕권유지와 국가이익에 중요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이는 조선 초기 관복제정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선 건국 후 처음으로 받은 고명과 인신, 구장복의 사여는 조선왕조의 형식적 완립과 태종의 즉위를 인정받는 것으로 당시 조선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태종이 왕권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태종대의 원만한 대명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태종대의 제도정비에서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舊制를 없애고 명제를 따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종대의 정치적 성격은 당시의 국제질서 속에서 현실적인 사대외교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국내적으로 왕권의 정통성, 도덕성에 하자가 있던 태종으로서는 그 시대의 도덕적인 정당성이 필요함으로써 명과의 사대외교를 통해 국내적 왕권강화를 도모하고, 선진문화를 도입할 수 있었던 나름대로의 현실적 외교 전략으로써 결코 사대주의와는 구별된 실질적인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대명정책이었으므로 태종대의 관복제도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선 초기 왕권이 취약했던 태종 이방원은 대명관계를 통해서 확고한 정치적 지위를 보장받고자 명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전개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이러한 대명정책 방향은 조선 초기 관복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1) 태종실록 권3 2년2월26일(기묘). 태종실록 권6 3년10월 27일(신미).
- 2) 구현주(1996). 조선 태종의 왕권강화정책에 대하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
- 3) 국사편찬위원회(1995). 한국사 22(조선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서울: 탐구당문화사, p. 52.

- 4) 박원호(1983). 명「靖難의役」에 대한 조선의 대응. 아세아연구, 26(2), p. 190.
- 5) 강성조(1990). 조선전기 대명공무역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79.
- 6) 태종실록 권5 2년10월2일(임자).
- 7) 박원호(1983). 앞의 글, p. 193.
- 8) 태종실록 권5 3년4월8일(갑인).
- 9) 종계문제는 이성계가 친원세력이었던 李仁人의 아들이라는 祖訓條章의 내용을 祀文에 삽입하여 조선에 전달함으로써 조선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다.
- 10) 박원호(2002). 명초조선관계사연구, 서울: 일조각, p. 165.
- 11) 태종실록 권3 2년2월26일(기묘). 태종실록 권6 3년10월 27일(신미).
- 12) 태종실록 권20 10년8월28일(임술).
- 13) 태종실록 권31 16년1월13일(병오).
- 14) 태종실록 권2 원년12월9일(계해).
- 15) 태종실록 권3 2년2월2일(을묘).
- 16) 태종실록 권3 2년2월26일(기묘).
- 17) 태종실록 권6 3년10월27일(신미).
- 18) 태종실록 권15 8년4월2일(경진).
- 19) 태종실록 권31 16년1월13일(병오).
- 20) 태종실록 권31 16년3월30일(임술).
- 21) 태조실록 권2 원년12월12일(무오).
- 22) 태조실록 권8 4년7월9일(정미).
- 23) 종보문헌비고 권79, 예고26 장복1 군복.
太祖三年明太祖賜冕服九章圭玉佩
- 24) 연려실기술 별집 권13 정교전고 관복.
高皇帝賜冕服九章圭玉佩
- 25) 유희경(1975).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 242.
- 26) 태종실록 권3 2년2월26일(기묘).
- 27) 태종실록 권3 2년3월7일(경인).
- 28) 태종실록 권36 18년11월8일(갑인).
- 29) 세종실록 권30 7년12월25(경인).
- 30) 종보문헌비고 권79, 예고26 장복1 군복.
太宗二年明建文帝遣行人潘文奎賜九章冕服曰玉圭曰玄冕曰繪衣繪五章龍山火蟲宗彝曰纏繪裳曰大帶曰白繪中單衣曰雙佩曰紅綬曰白羅方心曲領曰纏繪蔽膝曰緋襪曰緋舄
- 31) 연려실기술 별집 권13 정교전고 관복.
太宗二年建文皇帝賜九章冕服曰玉圭曰玄冕曰繪衣五章龍山火華蟲宗彝曰纏繪裳曰大帶曰白繪中單衣曰雙佩 曰紅綬 曰白羅方心曲領曰纏繪蔽膝 曰緋襪 曰緋舄
- 32) 태종실록 권6 3년9월9일(갑신).
- 33) 고려사 지26 여복 공민왕19년5월.
- 34) 명사 권66 지제42 여복2, 대명회전 권60 예부18.
- 35) 세종실록 권31 8년2월26일(경인).
- 36) 태종실록 권32 16년11월25일(임자).